#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15

발의연월일: 2024. 9. 9.

발 의 자: 박은정・김준형・조 국

이해민 · 강경숙 · 김재원

김선민 · 정춘생 · 서왕진

신장식 • 황운하 • 차규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로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범죄 재범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음.

성범죄에서 현실 세계의 시·공간적 한계를 전제로 하는 기존의 준수사항만으로는 재범 요인의 제거·약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들이 늘고, '재범 우려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금지를 준수사항에 반영할 필요 있음.

이에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불

법촬영물등의 소지·보관·시청 금지'및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고자 함(안 제32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법률 제 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중 "금지"를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불법촬영물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 소지·보관·시청 금지
- 11.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휴대폰 등 인터넷 기기 제출 요구 및 불법촬영물 차단 프로 그램 설치 등)에 따르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12.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
사항) ①・② (생 략)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	③
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	
다.	<b>.</b>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3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u>금지</u>	<u>금지(정보통</u>
	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
	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
	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
	<u>한다)</u>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10. 불법촬영물 등(「성폭력범

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④·⑤ (생 략)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 의2에 따른 편집물 등,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에 따른 아 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보관·시청 금지

- 11. 불법촬영물 등의 소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 찰관의 지시(휴대폰 등 인터 넷 기기 제출 요구 및 불법촬 영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 에 따르고 이를 방해하지 아 니할 것
- 12.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 (4)·(5) (현행과 같음)